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 | | |
|--------------|----------------------------|-----------|
| 1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2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 3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 | | | | | |
| 계정 과목 | 구 분 | 자체 연구개발비 | | |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
| |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 재료비 등 | | | |
| | 인원 | ⑥ 금액 | 건수 | ⑦ 금액 | 건수 | ⑧ 금액 | |
| 합 계 | | | | | | | |
| 계정 과목 | 구 분 | 기타 연구개발비 | | 인력개발비 | | ⑪ 총 계 (⑥+⑦+⑧+⑨+⑩) | |
| | | 건수 | ⑨ 금액 | 건수 | ⑩ 금액 | | |
| | 합 계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 | | | | |
|------------------------------|-----------------------------------|-----------|-----------|---------------------------------|-----------|
| 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⑪) | ⑬ 직전 4년 발생액 (⑭+⑮+⑯+⑰) | ⑭ (직전 1년) | ⑮ (직전 2년) | ⑯ (직전 3년) | ⑰ (직전 4년) |
| ⑱ 직전 4년간 연 평균발생액 (⑬/4) | 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⑯)/3] | | | 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⑮+⑯)/2] | |
| ㉑ 증가발생액 (⑫-⑭) | | | | | |

| | | | | | | |
|---|--------------------------------|--|----------------|------------------------------------|---|--|
| 4 공제세액 | | | | | | |
|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 중소기업 | ㉒ 대상금액(=⑪) | ㉓ 공제율 25% | | | ㉔ 공제세액 (㉒×㉓) |
| | 중소기업 유예 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 ㉕ 대상금액(=⑪) | ㉖ 유예기간 종료연도 | ㉗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 ㉘ 공제율 종료 이후 1-3년차 20%(15%) 종료 이후 4-5년차 15%(10%) | ㉙ 공제세액 (㉕×㉘) |
| | 중견기업 | ㉚ 대상금액(=⑪) | ㉛ 공제율 8% | | | ㉜ 공제세액 (㉚×㉛) |
| | 일반기업 | ㉛ 대상금액(=⑪) | ㉜ 기본율 | ㉝ 추가 | ㉞ 계 (㉜+㉝) | ㉟ 공제세액 (㉛×㉞) |
| | | | | 0% | | |
|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⑱ 경우 공제 제외) | | ㉟ 대상금액(=㉑) | ㊱ 공제율 % | | ㊲ 공제세액 (㉟×㊱) | *공제율 - 중소기업: 50% - 중견기업: 40% - 대기업: 25% |
| ㊳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 | 중소기업 (㉙와 ㊲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㉙와 ㊲ 중 선택) | | 중견기업(㉜와 ㊲ 중 선택) 일반기업(㉟과 ㊲ 중 선택) | | |

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 구분 | 출연금 교부처 | 관련 법령 | 수령일 | 수령 금액 |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구분 | 인정일 (고시일) | 취소일 | 연구개발 인력 | | | | | | | | |
|----|-----------|-----|---------|----|--------|----|-------|----|-----|----|--|
| | | | 계 | | 연구전담요원 | | 연구보조원 | | 기 타 | |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⑥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2)(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의 비용을 적습니다.
- 재료비 등의 "⑦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3)·4)·5)·6)의 비용을 적습니다.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의 "⑧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
- 기타 연구개발비의 "⑨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
- 인력개발비의 "⑩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 비용을 적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의 "㉔ 공제율" 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20%, 3년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는 괄호 안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 공제율의 "㉕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 ⑤, ⑥의 "구분"란: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어·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그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작성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2)[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의 비용을 적습니다.
- "⑦ 재료비 등"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3)·4)·5)·6)의 비용을 적습니다.
-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
-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
- "⑬, ⑭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 "⑮ 기본율"란: 2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25%)를 적습니다.
- "⑤, ⑥의 "구분"란: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 | |
|--------------|----------------|-----------|
| 1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 | | |
|---------------|---------|---------|
| 2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 | | | | | |
|-----------------------------|----|------|---------------|---------|-----------------|------------|-------------------|
| 기술명 | 구분 | 계정과목 | 자체 연구개발비 | |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 ⑨ 기타 연구개발비 | ⑩ 합계 (⑥+⑦+⑧+⑨) |
| | | |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⑦ 재료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4 공제세액 | | | | | | |
|----------------|------------|--------------|------------------|------|--------------|-------------------|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 ⑪ 대상금액 (= ⑩) | 공제율 | | | ⑮ 공제세액 (⑪ × ⑭) |
| | | | ⑫ 기본율 | ⑬ 추가 | ⑭ 계 (⑫+⑬) | |
| | | | 40% | | | |
| | 중소기업 외의 기업 | ⑯ 대상금액 (= ⑩) | ⑰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도 | 공제율 | | |
| | | | ⑱ 기본율 | ⑲ 추가 | ⑳ 계 (⑱+⑲) | |
| | | | 30% 또는 35% | | | |

| 5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 | | | |
|--|---------|-------|-----|------|----------------|
| = 연구·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 | | | | |
| 구분 | 출연금 교부처 | 관련 법령 | 수령일 | 수령금액 |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6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 | | | | | | | | |
|--------------------------------|--------------|-----|---------|----|--------|----|-------|----|----|----|
| 구분 | 인정일 (고시일) | 취소일 | 연구개발 인력 | | | | | | | |
| | | | 계 | | 연구전담요원 | | 연구보조원 | | 기타 |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작성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2)(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의 비용을 적습니다.
3. "⑦ 재료비 등"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3)·4)·5)·6)의 비용을 적습니다.
4.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
5.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
6. "⑬, ⑰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⑱ 기본율"란: 3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5%)를 적습니다.
8. "⑤, ⑥의 "구분"란: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 |
|------------|---------------------|-------------------------------------|-------------|--|
| 과 세 연 도 | · · · ~ · · · |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법 인 명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단위: 원)

| ① 연구과제명 |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인건비 및 사회보험 료 합계액 | 연구전담 등 구분 |
| 합 계 | | | | []전담, []보조, []기타 |
| | | | | []전담, []보조, []기타 |
| | | | | []전담, []보조, []기타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 ③ 연구과제명 | ④ 재료비 등 | | | |
|---------|---------|-----------------------|-----------------------|---|
| | 계 | 견본품 등 (별표 6 1.가.3) | 임차료 등 (별표 6 1.가.4)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비용 (별표 6 1.가.5)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매비용 (별표 6 1.가.6) |
| 합 계 | | | | |
| | | | | |
| | | | | |

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⑤ 연구 과제명 | ⑥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 | | | |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
|-------------|----------------------|-------------|------------------|-------|-------|------|--------------------------|
| | 위탁(재위탁)연구 또는 공동연구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연구착수일 | 연구종료일 | ⑦ 금액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⑨ 비용구분 | ⑩ 기타 연구개발비 | | |
|--------|------------|------------------------|------|
|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 일 | ⑪ 금액 |
| 합 계 | | | |
| | | | |
| | | | |

5.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⑫ 비용구분 | 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 | | ⑭ 지급처 또는 구입처 | | ⑮ 금액 |
|--------|----------------|------|--------------|-----------------|------|
| | 성명 | 생년월일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방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 가. "①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나.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다.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⑥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라.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 마.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 다. "④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⑦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다. "⑥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란은 연구과제 수행 활동을 위탁(재위탁)연구와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라. "⑦ 금액"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의 "⑩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마.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연구과제의 수행 활동이 위탁(재위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아래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기타 연구개발비를 지급처별로 작성합니다.

(단위 : 원)

| ⑨ 비용구분 | ⑩ 기타 연구개발비 | | |
|-------------|------------|-----------------|------------|
|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⑪ 금액 |
| 합 계 | | | 17,000,000 |
| 직무발명보상금 | 김00 | 00.00.00 | 5,000,000 |
| 특허 조사·분석 비용 | 00특허법인 | 000-00-00000 | 12,000,000 |

다. "⑪ 금액"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기타 연구개발비의 "⑨ 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아래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인력개발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단위 : 원)

| ⑫ 비용구분 | 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 | | ⑭ 지급처 | | ⑮ 금액 |
|-----------------------|----------------|----------|----------|-----------------|------------|
| | 성명 | 생년월일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합 계 | | | | | 12,800,000 |
| 위탁훈련비 | 김00 | 00.00.00 | 0000본부 | 000-00-00000 | 400,000 |
| 위탁훈련비 | 남00 | 00.00.00 | 0000기관 | 000-00-00000 | 2,400,000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 | 도00 | 00.00.00 | 0000공단 | 000-00-00000 | 1,800,000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 | 라00 | 00.00.00 | 0000공단 | 000-00-00000 | 3,000,000 |
| 생산성 향상 교육 | | | 00진흥원 | 000-00-00000 | 2,600,000 |
| 계약학과 운영비 | | | 00대학교 | 000-00-00000 | 2,600,000 |

다. "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란: "⑫ 비용구분"란의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가목의 비용(위탁훈련비)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의 비용(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탁훈련비가 훈련대상자별로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훈련비 총액을 훈련대상자 총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훈련대상자별로 "⑮ 금액"란에 적습니다.

라. "⑮ 금액"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인력개발비의 "⑩ 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앞쪽)

| | | | |
|------|---------------|--|----------------|
| 과세연도 | . . . ~ . . . |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법 인 명 (상 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단위: 원)

| ① 연구 과제명 | ② 기술 구분 코드 |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연구전담 등 구분 |
| 합 계 | | | | | |
| | | | | | []전담, []보조, []기타 |
| | | | | | []전담, []보조, []기타 |
| | | | | | []전담, []보조, []기타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 ④ 연구 과제명 | ⑤ 기술 구분코드 | ⑥ 재료비 등 | | | |
|-------------|--------------|---------|------------------------|------------------------|---------------------------------------|
| | | 계 | 견본품 등 (별표 6 1.가.3)) | 임차료 등 (별표 6 1.가.4))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비용 (별표 6 1.가.5))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⑦ 연구 과제명 | ⑧ 기술 구분코드 | ⑨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 | | | |
|-------------|--------------|--------------------------|-------------|------------------|-------|-------|------|
| | | 위탁(재위탁) 연구 또는 공동연구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연구착수일 | 연구종료일 | ⑩ 금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⑫ 연구 과제명 | ⑬ 기술 구분코드 | ⑭ 기타 연구개발비 | | | |
|-------------|--------------|------------|----------|--------------------|------|
| | | ⑮ 비용구분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⑯ 금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방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 공통 사항

- 가. "①, ④, ⑦, ⑩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②, ⑤, ⑧, ⑬ 기술구분 코드"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0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0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나.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중 ②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자체 연구개발비의 "⑥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②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자체 연구개발비의 "⑥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 가. "⑥ 재료비 등"란은 ④ 연구과제 및 ⑤ 기술구분 코드를 구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나. "⑥ 재료비 등" 중 ⑤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자체 연구개발비의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⑤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자체 연구개발비의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비용을 적습니다.
나. "⑨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재위탁) 연구와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위탁(재위탁) 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기관의 현황 등을 적습니다.
다. "⑩ 금액"중 ⑧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⑨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⑧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⑨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 "⑪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연구과제의 수행 활동이 위탁(재위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가. "⑮ 비용구분"란은 ⑫ 연구과제 및 ⑬ 기술구분 코드를 구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작성방법란 제4호나목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⑮ 금액"중 ⑬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⑬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